

문서번호	자연생태과-1668				시 민
결재일자	2014. 1. 28.	주무관	산림관리팀장	자연생태과장	푸른도시국장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안소연	강인호	김재경	01/28 오해영
방침번호					

---

## 2014년 숲가꾸기 사업계획

---

2014. 1.

푸 른 도 시 국  
(자연생태과)

## 사전 검토항목

∴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'무 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토항목	검 토 여 부 (■ 표시)
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	● 시 민 : 유 ■ ( 숲가꾸기 행사 등 ) 무 □
	● 이 해 당 사 자 : 유 ■ ( 토지소유주 ) 무 □
	● 전 문 가 : 유 □ ( ) 무 ■
	● 음 브 즈 만 : 유 □ ( ) 무 ■
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	● 법 령 규 정 : 교통 □ 환경 □ 재해 □ 기타 □ ( 예시 :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) 무 ■
	● 기 타 사 항 : 고용효과 □ 노동인지 □ 균형인지 □ 홍보 □ 취약계층 □ 성인지 □ 장애인 □ 디자인 □ 갈등발생 가능성 □ 유지관리 비용 □ 바른 우리말 □ 무 ■
타 자 원 의 활 용	● 중 앙 부 처 : 유 ■ ( 산림청 ) 무 □
	● 민 간 단 체 : 유 □ ( ) 무 ■
	● 기 업 : 유 □ ( ) 무 ■
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	● 관 계 기 관 : 유 □ ( ) 무 ■
	● 민 간 단 체 : 유 □ ( ) 무 ■
	● 시 산 하 기 관 : 유 □ ( ) 무 ■

# 2014 숲가꾸기 사업 추진계획

조림지 및 기존 임야 지역의 산림환경을 개선하고 수목생장을 촉진함으로써 산림의 공익적 기능 및 경제적 가치 증진

## I 기본방향

- 제3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('14~'18)에 따른 숲가꾸기
- 숲의 기능에 부합하는 숲가꾸기를 통해 사업품질의 개선
- 현장관리 강화 및 철저한 실적관리를 통해 사업의 내실화
- 침엽수단순림은 솎아베기를 실시하여 밀도를 조절하고 산림의 다층구조화 및 수종의 다양성 유도
- 산물수집을 통해 목재 자원 활용 증진

## II 사업개요

- 대상지 : 조림사업 시행지 및 주요 산림
- 규모 : 420ha
- 사업내용 : 풀베기, 덩굴제거, 솎아베기, 산물수집 등
- 추진기간 : 2014. 1 ~ 12.
- 사업비 : 755백만원(국비327,675/ 시비427,675)

구분	면적(ha)	계(천원)	국비(천원)	시비(천원)
계	420	755,350	327,675	427,675
큰나무가꾸기	300	544,830	272,415	272,415
어린나무가꾸기	30	29,250	14,625	14,625
조림지가꾸기	90	81,270	40,635	40,635
서초구(의원발의)	-	100,000	0	100,000

## Ⅲ

## 추진방법

### 1) 숲가꾸기 사업의 품질 개선

- 현장과 부합하는 숲가꾸기 설계로 품질 향상 도모
  - ※ 설계시 「공익기능증진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 매뉴얼」 참조
- 조림지가꾸기와 큰나무가꾸기 작업을 분리한 이원화된 운영 권고
  - ㄱ. 조림지 사후관리 :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직영으로 추진하여 일자리창출 및 사업의 효율성 도모
    - 풀베기는 조림 당년도를 포함 3~5년간 추진하되, 잡초목이 무성할 경우 연 2회 실시하고 적기에 실행하여 사업효과 제고
    - 어린나무가꾸기는 조림 후 5~10년 경과되어 조림목의 수관경쟁이 시작될 때 착수하고 생육여건에 따라 추가실시
  - ㄴ. 숲아베기 및 산물수집 : 도급·계약 및 위탁·대행하여 사업품질 향상
    - 선목과 숲아베기를 분리발주 할 수 있으며, 선목은 반드시 선목자 격이 있는 자가 시행

### 2) 숲가꾸기 현장관리

- 명확한 사유 없이 숲아베기가 수반되는 사업을 5년 이내 반복 실행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지 선정 철저(자연재해 복구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반복 시행)
  - 숲가꾸기 사업의 표준지는 반드시 GPS좌표를 기록하고 도면화
-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·감독 강화 및 자격미달, 중복 기술자의 사업참여 제한
  - 숲아베기 수반작업은 전체 작업인원의 60%이상이 산림경영기술자 2급 이상

### 3) 산물수집 강화 및 재해에 강한 산림 육성

- 숲가꾸기 산물을 등산로 정비 및 목공예품 제작 등에 적극 재활용하여 숲의 자원화 실현
  - 목책제작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등산로 목책설치 및 셋길폐쇄
- 산불, 수해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의 산물을 반드시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재해발생 우려가 없는 지역으로 옮겨 부식이 촉진되도록 단목처리
- 도심 생활권 산사태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재해예방 차원의 숲가꾸기 확대
  - 산사태 위험지 1등급 지역에 숲가꾸기 우선 실시하여 나무의 뿌리 발달 촉진 등 재해에 대한 저항성 증진
  - 산사태 위험지 1등급 지역 내 숲가꾸기 산물은 전량 수집

### 4) 숲가꾸기 사업 실적관리

- 조림~벌채에 이르는 모든 산림사업 이력을 시스템으로 관리
  - 새울행정시스템에 입력 ⇒ 『사유림 경영정보 시스템』으로 연계 ⇒ 정부합동평가에 반영('15년부터 조림지사후관리 실적도 평가)
- 산주의 동의를 받아 산주와 함께하는 숲가꾸기 실현
  - 사업동의서 '무응답' 대상지는 공고대상에서 제외, 명확하게 '소재불문명'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만 공고처리
  - 산주의 정확한 주소 파악을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(주민등록등초본 열람), 지자체 세무부서의 협조를 받아 사업동의서 발송(내용증명우편, 등기우편)
  - 숲가꾸기 설계·시공 시 산주의 의견 수렴, 작업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

## 5) 숲가꾸기 안전사고 예방

- 작업 실행 전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및 안전수칙 반드시 준수
- 사업 착수 시 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교육(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)
- 개인 보호구 착용 의무화, 현장에 구급약품 비치, 상황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연락체계를 확립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
  - 개인보호구 : 안전모, 안전화, 작업복, 작업장갑, 무릎보호대, 통신장비 등

## 6) 숲가꾸기의 순기능에 대한 홍보 강화

- 숲가꾸기 작업 시 주요도로변 및 등산로에 홍보 입간판 및 현수막 설치하며 민원 사전예방 및 대응
- 숲가꾸기 기간(11.1.~11.30.) 행사 추진
  - 언론매체, 홈페이지,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홍보 집중 실시
  - 숲가꾸기 1일 체험의 참여대상을 학생,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

## IV

### 추진일정

- 계획수립 및 설계용역 : 2014. 1 ~ 2
- 설계심의 및 예산배정 : 연중상시
- 2014년 숲가꾸기 사업 착수 : 2014. 2 ~ (예산배정 즉시)
- 숲가꾸기 기간 운영 : 2014.11. 1 ~ 31(한달간)
- 숲가꾸기 사업실적 보고(월) : 매월 익월 3일까지

**V****행정사항**

- 『서울시 도시숲가꾸기 및 훼손지 복구 기본계획』 책자 및 도면의 기관별 실정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
- 사업시행 전 숲가꾸기 사업계획서 수립·제출
- 준공보고 후 숲가꾸기사업 실적(관리대장)을 서울산림행정에 등록  
⇒ 사유림 경영정보 시스템 연계를 통한 실적관리
- ※ 보고서식 및 사업관련 세부사항은 『2014년 산림자원분야 사업계획(산림청)』의 「2. 숲가꾸기」 부분 참고

- 붙임 1. 2014년 기관별 사업비 및 사업물량 1부.  
2. 숲가꾸기 설계·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1부.  
3. 숲가꾸기사업 관리대장 1부.  
4. 숲가꾸기 사업계획서(서식) 1부. 끝.

# 붙임 1. 2014년 기관별 사업비 및 사업물량

(단위 : 물량-ha, 예산-천원)

연번	기관명	계		큰나무가꾸기		어린나무가꾸기		조림지가꾸기	
		물량	예산	물량	예산	물량	예산	물량	예산
	계	420	755,350	300	544,830	30	29,250	90	81,270
1	종로구	27	36,540	13	23,610	4	3,900	10	9,030
2	중 구								
3	용산구	6	5,706	0	0	4	3,900	2	1,806
4	성동구	23	25,766	5	9,080	6	5,850	12	10,836
5	광진구	15	27,240	15	27,240	0	0	0	0
6	동대문구								
7	중랑구	34	40,122	10	18,162	4	3,900	20	18,060
8	성북구	18	23,560	8	14,530	0	0	10	9,030
9	강북구	15	23,878	11	19,978	4	3,900	0	0
10	도봉구	15	23,878	11	19,978	4	3,900		0
11	노원구	24	36,282	16	29,058	0	0	8	7,224
12	은평구								
13	서대문구	21	36,312	19	34,506	0	0	2	1,806
14	마포구	23	36,294	17	30,876	0	0	6	5,418
15	양천구	15	27,246	15	27,246	0	0		0
16	강서구	14	23,600	12	21,794	0	0	2	1,806
17	구로구								
18	금천구	22	39,954	22	39,954	0	0	0	0
19	영등포구								
20	동작구	15	27,242	15	27,242	0	0	0	0
21	관악구	30	50,972	26	47,216	2	1,950	2	1,806
22	서초구	0	100,000	0	100,000	0	0	0	0
23	강남구								
24	송파구	11	14,642	5	9,080	2	1,950	4	3,612
25	강동구								
26	동 부	15	27,240	15	27,240	0	0	0	0
27	중 부	12	22,000	12	22,000	0	0	0	0
28	서 부	15	27,240	15	27,240	0	0	0	0
29	서울대공원	25	45,400	25	45,400	0	0	0	0
30	유보금	25	56,236	13	23,400	0		12	10,836

※ 보조율 국비:시비 = 50:50(예외 : 서초구-전액시비, 의원발의)